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되어 철도운영자에게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안전법령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제재처분과 달리 철도차량 운전 면허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가중·감경기준이 없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의 가중·감경 기준 추가(안 별표 10의2)

위반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동기, 여객 또는 공중에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객차 내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기록된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신설(안 제76조의3)

범죄예방을 위해 객차 내에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범죄 피해자의 신고기간과 범죄수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30일 이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제1항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제76조의3(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 ----- ----- ----- ----- ----- ----- ----- ----- --. 다만,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기록장치로 수집한 <u>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5조 관련)

위반사항 및 내용	근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법 제20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마. 다리·머리·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사. 한쪽 다리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아.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3개 이상 잃은 사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	면허취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 망 자 가 발생 한 경우 부 상 자 가 발생 한 경우 1천만원 이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5의2.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2	경고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5의3. 법 제40조의2제5항	법 제20조제	효력정지	면허취소		

을 위반한 경우	1항제5호의2	1개월			
6.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7.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8.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9.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서 운전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10.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나 검사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7호	면허취소			
11. 철도차량 운전규칙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열차운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8호	효력정지 1개월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3개월	면허취소

비고: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까지 가증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세부기준 제5호, 제5의2호, 제5의3호, 제11호의 경우에 한한다)
 - 효력정지기간을 줄여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철도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효력정지기간을 늘려서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다른 열차의 운행안전 및 여객·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